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은 Korea Central Council of Social Enterprise(KCCSE)로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회원 상호 간의 협동정신에 기초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기업 및 시민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통합의 달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기업에 관한 각종 조사, 개발, 정책연구사업

2. 사회적기업에 관한 각종 홍보 및 출판사업
 3.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판매사업
 5.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6. 사회적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육성 사업
 7.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 협력 사업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법인이익의 공여) ① 법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② 법인의 공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직업,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법인의 이사, 감사, 출연자 등 법인과 관계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단체나

개인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법인 및 비법인 단체는 단체회원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은 개인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으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1. 정관 제4조에 준하는 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업실적이 인정되는 단체
2.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

제8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1. 일반회원: 시·도지부의 승인(시·도지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2. 특별회원: 시·도지부의 추천을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

④ 회원가입이 거절된 신청자에게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정하여진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로이 법인을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다.

1. 법인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하여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
2.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을 포함한 각종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3. 법인사업에 적극 참여 의무

③ 제2항의 회비,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 또는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절차는 이사회가 정한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③ 법인은 징계절차에서 징계 해당자의 소명권 및 재심신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상임대표): 1명
2. 공동대표: 5명 이내

3. 이사: 5명 이상 25명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명

제12조(임원의 임기와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대의원 총회를 기준으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인 시·도지부의 임원의 임기는 법인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② 임원의 궐위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후임자가 해당 절차를 거쳐 임원직을 승계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과 자격)

① 모든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시·도지부의 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다만, 해당 지부의 대표가 1명 이상일 경우 해당 지부가 추천한 자를 이사로 한다.)

② 이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이사: 일반회원인 법인 또는 단체의 법률적 대표

2. 선출직 이사

가. 일반회원 또는 특별회원인 법인·단체의 법률적 대표. 다만, 이사가 되려는 사람이 회원단체의 법률적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가 회원단체를 대리하여 활동하고, 임원으로서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회원단체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특별회원 중 개인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감사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 및 공동대표는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및 목적사업의 집행과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사권을 행사하는 일
3. 그 밖에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대우 및 보수) 비상임 임원과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9. 그 밖에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 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법률 및 재무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모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손실이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장 조직

제1절 대의원 총회

제18조(대의원 총회의 구성) ① 법인은 최고의결기구로 대의원 총회를 둔다.

②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대의원의 선출과 자격) <삭 제>

① 대의원 선거는 회계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임원: 이사 및 시·도지부 임원. 다만, 정관에서 시·도지부에 정한 당연직 대의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 중에서 호선한다.

2. 선출직 대의원

가. 일반회원 또는 단체회원인 법인·단체의 법률적 대표. 다만,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회원단체의 법률적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대의원 후보자가 회원단체를 대리하여 활동하고 임원으로서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회원단체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특별회원 중 개인 회원: 시·도지부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시·도지부별 대의원의 배정은 이전 회기의 대의원 총회에서 정한다.

제20조(대의원 총회의 개최와 운영) ① 이사장은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 총회는 정기 대의원 총회와 임시 대의원 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 대의원 총회는 연 1회, 매년 3월까지 개최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④ 정기 대의원 총회는 15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 총회는 최소 7일 이내에 소집·공고한다.

⑤ 임시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⑥ 대의원 총회 소집권자가 없거나 회의소집을 게을리하여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청구 후 2주 안에 이사장이 대의원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 대의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대의원 총회의 책임과 권한)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법인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법인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회원제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대의원 총회의 의결 정족수)

- ① 대의원 총회는 정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개최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다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23조(이사회 위상과 구성)

- ① 이사회는 법인 최고의 운영기구로서 법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공동대표를 호선한다.
- ③ 공동대표는 사무국 운영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속하거나 정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제24조(이사회 개최와 운영)

- ①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 첫 달에 개최한다.

② 임시 이사회회의 소집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모든 이사회는 회의개최 예정일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소집 · 공고하며, 임시이사회회의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사전 공고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해야 한다.

제25조(이사회회의 책임과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인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시 · 도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및 부설기관 설치 ·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의원 총회에 부칠 각종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거나 또는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3절 사무국

제26조(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①법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소속 업무담당자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은 이사회의 업무를 행정·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지원한다.

④ 사무국장은 시·도지부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소집·개최·주관한다.

제4절 광역시·도지부

제27조(광역시·도지부의 설치와 운영) ① 법인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광역단위 행정구역별로 1개의 시·도지부를 설치·운영한다.

② 광역시·도지부는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승인하며, 이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제28조(광역시·도지부의 구성과 운영)

① 광역시·도지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모든 법인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광역시·도지부 대표는 해당 지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1명 이상 3명 이내의 공동대표를 둔다.

③ 광역시·도지부는 시·도지부 총회와 사무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모든 광역시·도지부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광역시·도지부의 책임과 권한)

- ① 모든 광역시·도지부는 법인과 이사회를 대신하여 해당 광역시·도에서 대내외적인 대표성을 가진다.
- ② 모든 광역시·도지부의 조직과 재정, 운영은 정관과 이사회가 정한 범위에서 의무적인 책임과 독립적인 자율성을 가진다.
- ③ 광역시·도지부는 정관 및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심의·승인한다.
- ③ 광역시·도지부는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일반회원 가입의 심의·승인권능을 가지며, 특별회원의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시·도지부에서 승인된 모든 일반회원은 제2장 회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을 받는다.

제5절 그 밖의 조직

- 제30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1조(각종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별도의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다만, 대의원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운영재산은 법인이 출연한 기본재산 중 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매·증여·교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3.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4. 수익사업 및 모금사업을 통한 기금
5. 전년도 이월금
6. 그 밖의 수익금

제3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회계 및 업무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회비 및 기부금 공개) 연간 회비 및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등

제38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등기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① 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고 이사장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청산 후 잔여재산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41조(공고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간지 등에 공고한다.

제42조(준용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11. 3. 18.)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